

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·등록자 정기점검 추진

-축산업 허가·등록기준,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-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- ◎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·등록기준 적합여부,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.
-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법 개정·시행(2020.1.1.)으로 축산업 허가·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'2년 1회'에서 '매년'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.
- ◎ 특히, 금년도에는 지자체와 축산관련기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점검대상을 나누어서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.
- 시·도 주관 하에 시·군·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·운영하고, 지역 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·등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 한다.
-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·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·축산환경 관리원 등 축산관련기관*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밀집사육지역,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.
*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축산법 제51조, '20.1.1. 시행)
- ◎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'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처리업, 가축사육업, 가축거래상인'이며,
- 점검사항은 「축산법」제28조,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사육·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,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·농약사용기준 준수여부,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.

- ◎ 농식품부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(징역·벌금), 과태료, 행정처분(영업정지·취소)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.
- 금년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축산 농가 스스로 시설·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 사육두수 준수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.
 - * 벌칙 강화·신설 : 가축거래상인 미등록 (1년이하 징역/1천만원 이하 벌금 → 3년/3천만원), 종죽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 생산(신설: 1년 이하 징역/1천만원 이하 벌금)
 - * 영업정지 강화·신설 :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(신설: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, 2회 위반시 3개월, 3회이상 위반시 허가취소),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(1회 위반시: 경고 → 영업정지 1개월)
 - * 과태료 상한액 상향 :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(200만원 → 400), 시정명령 미이행(300 → 800), 준수사항 위반 (500 → 1,000), 교육의무 위반(100 → 400) 등

참고 1 ▶ '20년 축산업 허가·등록제 일제점검 계획

- ◎ 점검목적
-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·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 정기점검 필요 (축산법 제28조)
 - * '20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·군·구의 정기점검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('19년까지 : 2년에 1회 이상)
- ◎ 점검개요
- (점검대상) 축산업 허가자*,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
 - *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'종죽업', '부화업', '정액등처리업', '가축사육업'
 - ** 허가·등록현황('19.12월): 125천호 / 허가 68, 등록 56, 가축거래상인 1
- (점검기간) (시·군·구) '20. 1~10월, (관계기관 합동) '20. 1~11월
- (점검반) 각 시·도 주관으로 시·군·구별 점검반 편성·운영
 - * 지자체 점검 외 우리 부주관으로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 편성하여 운영
- (점검방법) 반별로 해당 농장·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사항을 확인

○ (점검사항) 축산업 허가·등록기준, 준수사항, 의무교육 등 준수여부 확인

구 분	주요 점검내용
허가기준	○ 종축별 필수시설·장비(사육·소독·방역), 적정사육면적, 위치기준 등
의무준수사항	○ 위생 및 방역관리, 의약품·농약사용기준 준수, 거래상등록 등
기타	○ 축산업 허가·등록자 보수교육 이수, 휴·폐업 신고 등

◎ 향후계획

- (점검)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·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(20.1~11월)
- (조치)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(징역·벌금), 과태료, 행정처분(영업정지·취소) 조치

참고 2

축산업 허가·등록제 사업개요

◎ 축산법 상 허가·등록 개요

-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 차단·방역 등 축산업 보호를 위해 '13.2월 축산업 허가제를 연차적으로 도입(축산법 제22조)

* 축산업(4개 업종) : 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처리업, 가축사육업

◎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 요건

- 축산법 시행령 제14조(허가), 제14조의2기준(등록)에 따라 시설·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, 축사 위치기준 갖추어 시·군·구에 허가·등록

* (허가) 사육시설 면적 50㎡초과, (등록) 50㎡ 이하 (다만, 10㎡ 미만인 닭, 오리 등은 등록제외)

허가기준: 사육기준 50㎡ 초과

① 시설·장비	사육시설	가축사육시설, 환기시설 등
	소독시설	차량·대인 소독시설, 차량진입 차단바,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, 신발 소독조 등
	방역시설	울타리나 담장, 출입금지 안내판 등
②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	소	(비육우) 7.0㎡/마리 <330㎡ 당 47마리>
	돼지	(비육돈) 0.8㎡/마리 <50㎡ 기준 62마리>
	닭	(산란계-케이지) 0.075㎡/마리, (육계-개방) 자연환기 33kg/m ²
③ 위치 기준	신규허가 제한	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
		축산관련시설로부터 500m 이내 * 도축장, 사료공장, 원유집유장, 종축장, 정액등처리업체, 축산연구기관 등

등록기준: 사육기준 50㎡ 이하

① 사육시설	○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, 환기시설을 갖출 것
② 소독시설	○ 간이 분무용 소독기, 분무용 소독시설, 신발 소독조

◎ 위반 시 주요 제재사항

- 허가·등록기준 등 위반 시 벌칙, 과태료, 행정처분(영업정지, 허가취소) 등 조치

구분	위반사항	제재사항
벌칙 (법 53조)	○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경영	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과태료 (법 56조)	○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경우	(1회) 100만원, (2회) 200 (3회) 400
허가취소 등 (법 25조)	○ 중요한 시설·장비*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* [허가] 사육시설, [등록] 환기시설 ○ 방역 시설·장비*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	영업정지, 허가취소 시정명령(3개월 범위 내)

